

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

개정 2023.12.28 / 2024.1.22 / 2024.6.24

1. 목적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, 동 법 시행령(이하 "자본시장법", "자본시장법 시행령")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(이하 "협회 업무규정")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산정 모범규준」에 의거하여 당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자본시장법 제74조(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)
-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5조(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)
- 금융투자업규정 제4-39조(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등)
- 금융투자업규정 제4-46조(투자자예탁금이용료)
- 업무규정 제3-7(이용료율의 산정 및 변경절차)

2. 정의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, 자본시장법 시행령, 자본시장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"투자자예탁금"이란 「금융투자협회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3-5조 각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위탁자예수금,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,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.
- "직접비"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수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(제3항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- "간접비"란 감독분담금, 지급결제 관련비용, 인건비, 전산비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.

3.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대상 기간 및 지급일

- 지급대상기간은 전 분기의 지급일부터 금번 지급일 전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.
- 정기지급은 매분기 해당되는 월(1, 4, 7, 10월)의 두번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.
(단,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순연한다.)
- 수시지급은 계좌 폐쇄 시 폐쇄일에 지급한다.

4.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

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[별첨1]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료율을 적용한다.

5.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

- ① 투자자예탁금이용료는 일평균 잔액 기준이 100,000원을 초과하는 계좌에 한해 지급한다.
- ②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시 직접비 및 간접비를 구분하여 배분하여야 하며, 투자자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 및 간접비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한다.
- ③ 회사는 예탁금업무 외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비로 분류해서는 아니된다.
- ④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자별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.
단, 「투자자군별로 소요원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, 이에 따른 이용료 차이를 인정한다.」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소요원가 차이 등이 있는 경우 이용료 및 지급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6.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절차

- ①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1회 이상 재산정한다.
- ②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심사 등을 위하여 내부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- ③ 내부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[별첨2] "내부 심사위원회 운영지침"에 의한다.
- ④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 후 변경한다.

7.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개별적용 및 사후관리

- 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및 지급방법을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관리자는 개별 적용의 근거를 기재 하여 대표이사의 개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② 개별 승인 계좌에 대해서는 연 1회 (1월 예탁금이용료 지급일 이후) 금리변동, 운용수익 등 이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한다.

8.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경 보고 및 시행일

- ①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기준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본 기준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본 기준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별첨 1)

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및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계산 방법

1.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(2024년 6월 24일 기준)

구분	장내 파생상품 위탁자 예수금		일반상품	비고
이용료율(% 년)	원화	외화	금현물	
	0.6% (원미만절사)	0.0%	0.6% (원미만절사)	

2.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계산 방법

(지급기간평잔 * 예탁금이용료율) / 365 * 예탁일 수

* 지급기간평잔액은 예탁현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 제외

* 예탁일수는 전분기 지급일로부터 지급 예정일 전일까지의 일수(한편 놓기)

별첨 2)

내부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심사를 위한 내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위원회의 구성

- ① 위원장 : 기획관리 본부장
- ② 위 원 : 국내영업지원팀, 컴플라이언스팀, 기타 각 부서의 장
그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③ 위원회는 1항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 적정하게 개최된 것으로 한다.

3. 위원회의 운영

- ① 위원회는 매분기 (3, 6, 9, 12월) 마지막 주 첫 영업일에 개최한다.
- ② 위원회는 심의 및 승인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한다.
-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4. 위원회 부의사항

- 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내역 적정성 심사
- ②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심사

5. 결의

- ① 위원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(관리자급 이상의 대리자가 출석도 인정한다)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②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6. 의사록

국내영업지원팀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, 위원장과 출석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